무배당 KB손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사업방법서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무배당 KB손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사업방법서

제1조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KB손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사업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사업방법서의 계약자를 말한다.
 -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 사업방법서에서 "연금규약"이라 한다)에 의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 사업방법서에서 "이 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자로서 이 사업방법서의 피보험자를 말한다.
 -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
 -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한다.
 -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 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
 -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사업방법서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사업방법서에서 "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사업경영의 지역 및 범위)

① 지역

회사와 확정급여형 자산관리보험계약(이 사업방법서에서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용자에 소속하고, 장래에 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퇴직급여제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또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② 범위

법 제13조에 의하여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사업방법서에서 "회사"라 한다)가 법 제29조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각종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

회사는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단위의 점포 및 대리점의 업무는 법·보험업법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5조 (가입자의 범위)

- ①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 가입할 때 가입자로 되는 자는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연금규약에 의거하여 장래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이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미 근로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과실 등에 의해 미가입된 자를 추가로 가입시킬 수 있다.
- ③ 추가 가입한 가입자의 가입일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가 추가 가입시킨 날로 한다.
- ④ 가입자는 퇴직 등 연금규약에 정해진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6조 (보험종목의 세목)

주계약

- 1. 금리연동형
- 2.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 3. 실적배당형
 - 가.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 나.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다.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라.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마.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바.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사.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아.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제7조 (이율의 적용)

① 이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세목별 적립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아래의 적용이율로 한다.

구분		적용이율
금리연동형		금리연동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1년	1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형	이율보증기간 2년	2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이율보증기간 3년	3년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② 적용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 1. 금리연동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적용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한다. 적용이율은 회사가 금리연동형 특별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2:1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수익률 및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 주) 한도 산출 이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예시 : 한도 산출 이율이 5.155% 일 경우 5.16% 적용함
- 가. 운용자산이익률은「투자수익」을 반영한「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비용」을 반영한「투자기출률」을 차갂하여 산출한다.
 -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수익률 투자지출률

- 운용자산수익률(%) = [(1 + 경과수익률)^{12/6} 1] × 100
- 투자지출률(%) = [(1 + 경과지출률)^{12/6} 1] × 100

주)

① 평균자산 =
$$\frac{\text{해당월 직전 6개월말자산 + } \sum (\text{해당월 전월까지 월말자산 } \times 2) + \text{해당월말자산}}{6 \times 2}$$

단, 매월말 현재 특별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에 투입되지 않고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중인 납입부담금은 제외

- ② 해당월(적용이율 산출시점의 직전월)부터 과거 6개월간 누적 투자수지(손익계산서) = 투자수익(대변합계-부담금수익)-투자비용(차변합계-계약자적립금 전입-지급보험금-특별계정운용수수료) 단, 주주지분 이익 또는 주주의 손실보전금 제외
- 나. 지표금리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통화안 정증권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 (A1 + A2 + A3) / 3
 - A1: 국고채(3년만기)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2: 회사채(3년만기, 무보증, AA-)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A3: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 가중이동평균이율(Ai) = [Mi(-3)×1 + Mi(-2)×2 + Mi(-1)×3] / 6
 - Mi(-3)은 직전 3개월, Mi(-2)은 직전 2개월, Mi(-1)은 직전 1개월 이율

주)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③ 통화안정증권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④ 평균값은 각 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 월의 당월 15일까지의 평균으로 산출
- 2. 이율보증형에 적용되는 적용이율의 계산
- 가. 적용이율은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아래의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며, 설정 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가 동안 확정 적용하다.

회사는 매월 1일의 지표금리를 기준이율로 하며, 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각 단위보험별로 단위보험 설정일에 적용이율을 결정한다. 다만, 시중금리 및 기타 투자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이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은 산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나. 지표금리는 「국고채 수익률」,「회사채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단, 산출된 지표 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이율보증형 1년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1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2년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 회사채(2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이율보증형 3년 지표금리]

○ 지표금리(%) = A1 × 0.7 + A2 × 0.3

A1 : 국고채(3년 만기) 수익률의 평균값

A2: 회사채(3년 만기, 무보증, AA-) 수익률의 평균값

주)

- ① 국고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국고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② 회사채수익률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의 평균값
- ③ 평균값은 매월 1일부터 과거로 기산해서 7번째 영업일에서 16번째 영업일까지 10영업일 동안의 해당수익률을 산술 평균함
-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은 해당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확정 적용하고, 이율보증형의 적용이율은 설정된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동안 적용한다.
- ④ 이율체계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제2항의 적용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산출방식을 변경할 경우에는 유지되고 있는 금리연동형 상품과 이율보 증형 상품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한 적용이율별 적용기간 이후부터 적용한다.
- ⑤ 제1항의 금리연동형 적용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2%로 한다.
- ⑥ 세부적인 적용이율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적용이율 운용지침을 따른다.
- ⑦ 보험세목별 지표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대표적인 시장지표가 되는 다른 수익률(예, 시가평가기준수익률 등)로 대

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부담금의 종류)

① 표준부담금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장래 근무기 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한다.

② 보충부담금

법 제14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설정 전의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특별부담금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의 95%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9조 (보험기간 및 부담금 납입)

① 보험기간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또는 전부 계약이전일까지

② 납입기간전기납

③ 수금방법

사용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회사의 방문 수금 등

제10조 (보험계약 체결절차)

- ① 이 계약은 사용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지체없이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사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용자가 청약한 경우 사용자에게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원본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과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수수료)

- ①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관리보험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운용관리수수료 지급 통지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수수료를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한다.

제12조 (배당금의 지급)

배당금 없음

제13조 (급여의 종류 및 지급)

① 급여의 종류 : 일시금

② 급여의 지급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한다. 다만,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립금 운용방법별 적용이율(단, 실적배당형의경우 금리연동형 적용이율)+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 제18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압류, 가입자와의 연락두절 등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해지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가입자의 개인형퇴직 연금제도 계정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자산관리기관으로 해지환급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기 전과 후의 차액(이 사업방법서에서 "중도해지부과액"이라 한다)을 잔여 적립금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경우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중도해지부과액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계약의 전부를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잔여적립금이 중도해지부과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중도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양도 및 담보제공)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 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 (특별계정의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설정
 - 이 계약은 아래와 같이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1.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 가. 금리연동형
 - 나. 이율보증형(이율보증기간 : 1년, 2년, 3년) : 이율보증기간별로 설정 운용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 가.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 나.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 다.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라.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마.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바.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사.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자.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 ② 특별계정의 운용 및 평가
- 1.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은 일반계정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인 경우 운용실적이 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하여야 한다.
- 2.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제18조 제8항 제1호의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말하며, 이 사업방법서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한다)는 특별계정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 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인하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자산관리수수료 및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적용할 수 있다.
- ③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여야 한다.
- 2. 시가법은 특별계정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 3.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경될 수 있다.
- ④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
- 1. 부담금의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사용자의 운용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담금을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한다.

-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각의 정해진 금액을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지급지시를 회사가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날에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다.
 - 가. 급여 등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나. 해지화급금 또는 적립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다. 이 계약이 소멸 또는 해지된 경우
 - 라. 자산관리수수료 및 운용관리수수료의 지급이 있는 경우
 -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 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손익처리
 - 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회사의 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이체에 따른 기간경과이자는 금리연동형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7조 (이율보증형의 운용)

- ① 회사는 사용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을 설정한다. 이때, 각 단위보험마다 설정된 보증기간을 "이율보증기간" 이라 한다.
- ② 부담금이 납입된 경우, 사용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1년, 2년, 3년)을 설정하며, 회사는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동안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계산한다.
- ③ 사용자는 이율보증기간 만기시점에 해당 단위보험 적립금으로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율보증기간 만기일까지 새로운 단위보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회사는 단위보험 만기일에 직전 단위보험과 이율보증기간이 동일한 새로운 단위보험으로 자동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은 단위보험이 끝나는 날에 회사가 결정한 새로운 단위보험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을 적용한다.
- ⑤ 단위보험의 이율보증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적립금에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한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의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또는 편드자동재배분 운용지시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5항의 중도해지이율은 이율보증기간 및 해당 단위보험 설정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경과기간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 이율보증형 1년
 - 가. 경과기간 6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 나. 경과기간 6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0%
- 2. 이율보증형 2년
 - 가. 경과기간 12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 나. 경과기간 12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5%
- 3. 이율보증형 3년
 - 가. 경과기간 18개월 미만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80%
 - 나. 경과기간 18개월 이상 :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 90%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발생하는 중도해지부과액은 당해 보험세목 특별계정에 편입한다.

제18조 (실적배당형의 운용)

①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운용되는 자산(이 사업방법서에서 "펀드"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MMF, 단기대출,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거래 등 단기금융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2.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자산총액의 10% 이하

3.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4.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5.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

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50% 이상 (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6.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라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7.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 (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미만),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 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8.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채권 및 자산유동화채권, 어음, 채권형수익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단,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미만), MMF, 단기대출, 신탁업자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거래 등 단기금융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투자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 자산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이하,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이하,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② 펀드선택 및 변경

- 1.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운용관리기관에서 제시한 제1항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한다.
- 2.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부담금은 제1호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 된다.
- 3.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사에 서면 또는 운용관리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사이버 창 구로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펀드별 편입비율도 사용자가 정한 바에 따라 변경된다.
- 4.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제3호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거나 제6항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다.

- 5. 회사는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제4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가 처분되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 6.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사용자의 펀드 변경요구는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1. 사용자는 계약체결시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 재배분된다.
- 2.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펀드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재배분된다.
- 3. 사용자는 보험기간 중 운용관리기관을 통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4.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매 6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된다.
- ④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좌수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시점의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한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이때,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하고,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를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좌당 기준가격 = <u>당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u>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총 좌수

⑤ 초기투자자금

- 1. 회사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일반계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 2. 제1호에 정한 초기투자자금의 운용은 실적배당형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목에 의한다.
 - 가. 초기투자자금의 규모는 일반계정 총자산의 1%와 1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 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분기말 기준으로 초기투자자금의 2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기투자자금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일반계정으로 상환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기투자자금의 이체 또는 상환은 현금으로 한다.

⑥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폐지

- 1. 회사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하여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다.
- 가.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해 효율적 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 나.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다. 해당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라. 가목 및 다목에 준하는 경우
- 2. 회사는 제1호에서 정한 사유로 각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적립금과 함께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사용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지한다.

⑦ 투자한도에 관한 사항

약관의 투자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2.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3.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⑧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펀드종류별 운용보수
 - 1. 특별계정 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한다.
 - 2. 펀드 종류별 운영보수는 아래 표의 비용으로 한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0424658% (연 0.155%)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매일 0.000561644% (연 0.205%)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26027% (연 0.265%)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739726% (연 0.270%)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매일 0.000863014% (연 0.315%)

3. 펀드 종류별 투자일임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매일 0.000328767% (연 0.120%)
매일 0.000410959% (연 0.150%)
매일 0.000575342% (연 0.210%)
매일 0.000684932% (연 0.250%)
매일 0.001054795% (연 0.385%)

4. 펀드 종류별 수탁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054795% (연 0.020%)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5. 펀드 종류별 사무관리보수는 실제로 사용된 비용으로 하며 아래 표의 비용을 최고한도로 한다.

펀드유형	적립금 기준 수수료율
채권형1호(채권 편입비율 60%이상)	
배당주안정형1호(주식 투자한도 20%이하)	
인덱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채권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일 0.000041096% (연 0.015%)
인덱스플러스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매월 0.000041090% (현 0.013%)
성장주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장수기업혼합형1호(주식 투자한도 40%이하)	
성장주식형1호(주식 편입비율 60%이상)	

- 6. 특별계정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과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외에도 해당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별도의 수수료(판매보수 등)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 및 그 추가 수수료에 대해 안내자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 ⑨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

제8항의 비용 이외에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5조에 의한 회계 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실적배당형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인출하여 부담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9조 (보험세목의 선택 및 변경)

- ① 사용자는 제6조에서 정한 보험세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보험세목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5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른 다.

제20조 (적립금의 계산)

이 계약의 적립금은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 (청약서 등의 서식)

- ①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22조 (기타)

- ① 용어의 사용
 - 이 사업방법서에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는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로 한다.

② 약관의 변경

- 1. 약관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사용자가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3.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1호의 단 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사용자가 제1호의 계약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할 경우에는 제 17조 제5항 및 제6항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청약서 서식

보험증권 서식